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09호 2022. 5. 2.(월)

선	기관의 장
람	

【예 규】	
공주시의회 예규 제2호 공주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3
【공 고】	
제2022-9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31
제2022-930호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7
제2022-986호 공인 신조 공고	42
【고 시】	
제2022-80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43
제2022-81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48
제2022-82호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고시	50
제2022-83호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51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민소통담당관실 ☎ 041-840-8323)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 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정기발행 또는 수시 발행되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발행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

보급(배부)은 공주시 본청 모든 부서 및 산하 행정기관과 공주시 의회에 전자시보를 원칙으로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보급(배부)됩니다.

상기 보급대상기관은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주시기 바라며 일반인의 열람 요청 시 게재내용을 열람시키거나 출력하여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022.04.29 의회예규 제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공주시의회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 되어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의회사무국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의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의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소속기관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의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의회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의회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
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회피·기피·조치·점검·통보·고발·
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 신고) ① 의회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국민
권익위원회,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
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의회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의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
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
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

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6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의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징계양정 기준) 의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이 예규 별표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법 위반행위 관련 징계양정기준(제19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 거나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중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 가 약하고 경과 실인 경우
법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5조에 따른 신고신청제출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제한·금지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법 제14조에 따른 직 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 호법」 제12조제1항의 비 밀 보장 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 제2항 위반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9조제2항· 제3항을 위반하여 자 료제출 등 거부 행위 제20조의2의 특별보호 조치 결정 미이행	파면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비밀 누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작성방법

-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사적이해관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규칙을 포함)·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감독하였던 실·국·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① 법령·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②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③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④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②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작성방법

- ①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직무 대리자 지정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직무 재배정 [] 전보 [] 기타()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 ② “관련 직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지정·등록, 등재·인정·증명, 신고·심사, 보호·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소집·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법인·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부담금·과태료·과징금·이행강제금 등의 조사·부과·징수 또는 취소·철회·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지급·처분·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구매의 계약·검사·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상벌·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공립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①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②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④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 ③ “직무관련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본인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input type="checkbox"/> ① 특수관계사업자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개인 [] 법인 [] 단체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input type="checkbox"/>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input type="checkbox"/>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input type="checkbox"/>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물품 계약 <input type="checkbox"/> 용역 계약 <input type="checkbox"/> 공사 계약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②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익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익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익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익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골프 [] 여행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신고인 [] 퇴직공무원 [] 기타()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직무관련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 ②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	-----	-----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동의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	--

위와 같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공주시의회의장 귀하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input type="checkbox"/>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감독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사기관 <input type="checkbox"/> 감사원		
	종결사유 <input type="checkbox"/>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공주시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 3-36)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 공고

공주시 신관동 657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36) 부지내 『신관동 관골1길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일

공 주 시 장

1. 사업내역

종류	명칭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면적 (필지/㎡)	사업내용	사업 기간	비고
도시계획 시설(도로) 사업	신관동 관골1길 정비사업	신관동 657번지일원	37 / 3,574	L=282m B=12m	인가일~ 2023.06.30	

2.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시행자의 성명 : 공주시장(도로과장)
- 시행자의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3. 공람기간 : 2022. 05. 02. ~ 05. 16. (14일간)

4. 공람장소 : 도시정책과 (☎ 041-840-8547), 도로과 (☎ 041-840-8552)
 신관동 행정복지센터

5.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22. 05. 16.
- 제출처 : 공람 장소
- 제출방법 :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공람장소에 비치 또는 우편발송된 주민의견서 이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도시정책과(☎041-840-8547) 또는 도로과 (☎041-840-8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합계(37필지)			21,020	3,574	-	-	-	-	-	-	
1	신관동 684	도	8,687	143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	신관동 385-6	대	56	2	장기면 신관리 341	평산신씨 인하공종중	100/100	-	-	-	
3	신관동 385-2	도	92	9	장기면 신관리 341	평산신씨 인하공종중	100/100	-	-	-	
4	신관동 385-3	대	22	8	장기면 신관리 341	평산신씨 인하공종중	100/100	-	-	-	
5	신관동 384-3	대	95	24	충남 공주시 신관동 385	전정술	100/100	-	-	-	
6	신관동 540-64	도	82	23	국토교통부	국	100/100	-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	신관동 402-1	전	340	20	충남 공주시 신관동 389-1	김복태	3 / 9	-	-	-	
						이종영	2 / 9	-	-	-	
						이주연	2 / 9	-	-	-	
						이형석	2 / 9	-	-	-	
8	신관동 401-2	도	109	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76번길 31, 108동 1102호	신철자	11 / 66	-	-	-	
					대전시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105동 1401호	신철순	11 / 66	-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72번길18	신문철	11 / 66	-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065, 101동 702호	신철숙	11 / 66	-	-	-	
					대전시 서구 도산로321번길7, 206호	신철희	11 / 66	-	-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5길 58	김구남	3 / 66	-	-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35길 58	신상우	2 / 66	-	-	-	
					경기도 과천시 후곡로 50, 414동 1602호	신희상	2 / 66	-	-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한술로 83, 514동 603호	신재범	2 / 66	-	-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40, 1206동 1406호	신이나	2 / 66	-	-	-	
9	신관동 540-39	도	156	17	국토교통부	국	100/100	-	-	-	
10	신관동 394-2	도	418	404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1	신관동 397-1	답	79	12	충남 공주시 신관동340-10 덕성아파트 1-602	송인선	100/100	의당농업 협동조합	충남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664-8	근저당 권설정	
12	신관동 335-7	도	1,662	40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3	신관동 396-3	답	389	31	충남 공주시 신관동 348-5	신이현	1 / 3	한국타이 어주식회 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레한로 133	지상권 설정	
					충남 공주시 신관동 349	신상현	1 / 3	-	-	-	
					부천시 원미동 189-125	신의현	1 / 3	-	-	-	
14	신관동 396-34	답	9	9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5	신관동 396-35	답	1	1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6	신관동 396-11	답	123	4	충남 공주시 신관동 348-5	신이현	1 / 3	-	-	-	
					충남 공주시 신관동 349	신상현	1 / 3	-	-	-	
					부천시 원미동 189-125	신의현	1 / 3	-	-	-	
17	신관동 255-5	답	273	29	충남 공주시 신관동 255-5	신적현	100/100	공주 농협	충남 공주시 금성동 21-5	근저당 권설정	
18	신관동 255-6	답	19	19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19	신관동 256-4	대	459	44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포길85	김영준	100/100	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 (공주지점)	근저당 권설정	
20	신관동 256-9	대	62	62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1	신관동 256-6	대	513	3	충남 공주시 신관동 256-6	이찬규	100/100	합동새마 을금고	충남 공주시 신관동 587-20	근저당 권설정	
22	신관동 256-8	도	331	226	국토교통부	국	100/100	-	-	-	
23	신관동 644	도	539	111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4	신관동 383-4	도	168	50	기획재정부	국	100/100	-	-	-	
25	신관동 384-2	도	102	102	공주군 공주읍 중동 135	강응문	100/100	-	-	-	
26	신관동 657	도	2,521	1,094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7	신관동 402-3	도	165	165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8	신관동 401-6	도	103	103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29	신관동 400-2	도	130	124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지 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30	신관동 649-10	대	284	10	충남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491	노석중	100/100	-	-	-	
31	신관동 649-1	공	1,500	161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32	신관동 397-2	도	107	107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33	신관동 396-4	도	118	118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34	신관동 255-2	도	79	79	공주군 장기면 신관리 387	이교신	100/100	-	-	-	
35	신관동 256-2	도	88	88	공주군 공주읍 중동 135	강응문	100/100	-	-	-	
36	신관동 650-1	대	641	21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323	김권섭	9 / 10	-	-	-	
						강순자	1 / 10	-	-	-	
37	신관동 257-2	도	524	17	봉황로 1	공주시	100/100	-	-	-	

붙임2. 사용 또는 수용할 건축물 등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연장)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 명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신관동 401-2	도	철제 울타리	H=1.5m	40m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북2로 76번길 31, 108동 1102호	신철자 외 9인	-	-	-	

공주시 공고 제2022-930호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대한 경쟁제한성 관점에서 규제개선 과제로 제시되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완화하도록 규칙 개정이 요구됨에 따라 지적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적용조항 개선(안 제5조)
- 나. 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별표 4순위)
- 다. 면허발급 우선순위 개선(별표 5순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청 교통과

주소: 우)32552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교통과

전화: 041-840-8731 / FAX: 041-840-2328

이메일: bae3422@korea.kr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의 견

입법예고(안)	의 견(안)	사 유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

제 출 처 : 공주시청 교통과 (☎ 041-840-8731)

제출방법 ㄱ 우편 : 우)32552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ㄴ FAX : 041-840-2328 이메일 : bae3422@korea.kr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연장자순으로 한다.”를 “추첨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 순위(제5조 관련)에서 순위4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공자 또는 유족 중 1인에 한함)으로서 택시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별표] 공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우선 순위(제5조 관련)에서 순위5 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용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경찰청장(행정안전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 영년 표시장을 받은 자(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된 개인택시는 이 규칙에 의하여 면허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적용)</p> <p>① (생 략)</p> <p>② 동일 우선순위 내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무사고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경우 동일 업종 무사고 운전경력자, <u>연장자순으로 한다.</u></p> <p>[별표] 순위4 내용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순위</th> <th style="width: 9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td> </tr> </tbody> </table> <p>[별표] 순위5 내용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순위</th> <th style="width: 9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영년 표시장을 받은 사람. 다만, 영년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td> </tr> </tbody> </table>	순위	내 용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	순위	내 용	5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영년 표시장을 받은 사람. 다만, 영년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p>제5조(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적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추첨순으로 한다.</u></p> <p>[별표] 순위4 내용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순위</th> <th style="width: 9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공자 또는 유족 중 1인에 한함)으로서 택시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td> </tr> </tbody> </table> <p>[별표] 순위5 내용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순위</th> <th style="width: 90%;">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사업용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경찰청장(행정안전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td> </tr> </tbody> </table>	순위	내 용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공자 또는 유족 중 1인에 한함)으로서 택시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순위	내 용	5	사업용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경찰청장(행정안전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순위	내 용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중 1명																
순위	내 용																
5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경찰청장의 영년 표시장을 받은 사람. 다만, 영년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은 제외한다.																
순위	내 용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공자 또는 유족 중 1인에 한함)으로서 택시 또는 사업용자동차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순위	내 용																
5	사업용자동차를 11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및 경찰청장(행정안전부장관)의 10년 이상 무사고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다만, 동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공인 신조 공고

공주시 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신조하고,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공 주 시 장

○ 신조 공인 내역

소 관 부서명	공인명	인 영	규 격 (cm)	사 유	최초 사용일
월송동	공주시 월송동 장인 제3통합증명발급전용 (종직인)		2.1×2.1/ 훈민정음체/ 우레탄	월송동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따른 공인 신조	2022. 5. 2.
	공주시 월송동 장인 제4통합증명발급전용 (횡직인)		2.1×2.1/ 훈민정음체/ 우레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숫절길 121-20 외 3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05. 0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341-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숫절길 121-20	2022 0502	신규	2010 0112	마을에 숫이 많았다 하여 숫절길로 부여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 27-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차돌배기길 103-16	2022 0502	신규	2010 0112	차돌이 많이 나는 산이 있다는 차돌배기 명칭 활용	
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60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느릿시길 55	2022 0502	신규	2010 0112	여전부터 느릿하게 넓다 하여 느릿이라 불린 자연 마을 명칭을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구암리 234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작은말길 71	2022 0502	신규	2010 0112	원래부터 작은 마을이었다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 활용	
5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458	충청남도 공주시 한작길 67-16 (금흥동)	2022 0502	신규	2010 0112	자연마을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활용	
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390-6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초교길 12	2022 0502	신규	2010 0112	의당면의 대표적인 의당초등학교를 지나는 길이라 하여 의당초교길로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5-142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78-21 (상왕동)	2022 0502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8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61-5	충청남도 공주시 뛰어재뒷골길 26-14 (상왕동)	2022 05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9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도산리 431-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231-24	2022 0502	신규	2009 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반영	
10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막골길 50	2022 05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후, 다른 지역과 중복 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을 첨가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교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1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 515-1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리로 1130-4	2022 0502	신규	2009 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 로 행정구역 명칭반영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흥리 57-76, 169-5, 170-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고비고개길 10-5	2022 0502	신규	2010 0112	미암-내흥 사이의 고개이름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고비고개 길이라 부여	
1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화학리 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2길 23-548	2022 0502	신규	2010 0112	행정구역 명칭과 일련번호 방식 복합 반영	
14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594-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74-9	2022 0502	신규	2010 0112	도로의 끝자점에 도예촌이 있고 마을주민 모두가 도예촌을 향하는 길이라 인식 도예촌길로 부여	
15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472-26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금란길 15	2022 0502	신규	2011 0506	금란지교에서 따온 이름으로 마을 주민들간에 좋은 우애를 나누기를 소망하여 금란길로 부여	
1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129-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작은골2길 33	2022 0502	신규	2010 0202	남쪽에 있는 동원이 원골의 작은마을이라 하여 작은골2길로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49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사기장골길 145	2022 05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8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7-138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69-16 (상왕동)	2022 0502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1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361-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양호새터길 30	2022 0502	신규	2010 0112	새로운 곳에 터를 잡았다 하여 새터 길이라 한다는 자연마을 명칭 활용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2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 25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탑골길 85-117	2022 0502	신규	2010 0112	행정구역 명칭 활용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21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산정리 732	충청남도 공주시 신평면 황새골길 76	2022 0502	신규	2010 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2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76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뚝방이골길 31-10	2022 0502	신규	2010 0112	뚝방이 있었다 하여 뚝방골길로 부여	
2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 273-3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요당길 129	2022 0502	신규	2010 0112	예전 요룡리를 부르던 명칭으로 옛 명칭을 살려 요당길로 부여	
2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 산 46-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공수원로 143	2022 0502	신규	2009 0825	공수원이라는 명칭 활용	
25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 43-37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의당전의로 1350-112	2022 0502	신규	2009 0825	공주시 의당면과 연기군 전의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반영	
2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412-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산막길 21-45	2022 0502	신규	2010 0202	해당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7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리 345-8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목천길 81	2022 0502	신규	2010 0112	목천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 하여 목천길로 부여	
28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277-89	충청남도 공주시 가나무정길 63 (상 왕동)	2022 0502	신규	2010 0112	가나무가 정자처럼 서 있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자연마을 명칭을 활용	
2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평정리 9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화봉평정길 241-29	2022 0502	신규	2010 0112	화봉리와 평정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두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화봉평정길로 부여	
30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리 56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장원장자울 길 73-141	2022 0502	신규	2010 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후, 디른지역과 도로명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명칭 첨가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 일자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공적장부주소 전환 계획
3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117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풍태성길 175-7	2022 0502	신규	2010 0112	인풍리와 태성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활용하여 인풍태성길로 부여	고시 후 공문 발송 예정
32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리 357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가척돌정길 190-42	2022 0502	신규	2010 0112	돌샘이 있다하여 생긴 자연미를 명칭 활용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 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 구역 명칭 첨가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2.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막골길 52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민원토지과(☎840-84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05. 0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사항		공 적 장 부 주 소 전 환 계 획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일자	변경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13, 3-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3-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막골길 5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공암막골길 52	2022.04.26	건축물대장에 의한 관련지번 정정	고 시 후 공 문 발 송 예 정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대지조성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2년 5월 1일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의당면 수촌리 대지조성사업

2. 사업주체

- 법인명칭 : 태림환경(주)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북로 73, 202호(봉명동, 투유1)

3. 사업위치 : 의당면 수촌리 3-22 외 21필지

4. 사업규모

- 대지조성면적: 13,919㎡
(주택부지 11,125㎡, 단지내 도로 2,381㎡, 부대시설 380㎡, 국공유지점용 33㎡)

5. 사업기간 : 승인일 ~ 2022. 12. 31.

6. 의제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2022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2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2. 4. 30.

공주시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 등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2. 8. 31.	2022.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제외대상
손실보상 대상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영세 자영업자 (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 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공주시청 세무과(☎041-840-8345,8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